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4. 28 선고 2018가단79107(본소), 2018가단79114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

담당변호사 곽현준

피고(반소원고)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

변론 종결2020. 4. 14.

판결 선고2020. 4. 28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5,065,073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/3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[본소]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12,488,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¹⁾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반소]

원고는 피고에게,

1. 27,000,000원을,
2. 4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1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
3. 2018. 6. 1.부터 위 1항의 27,000,000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9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'D 피시방'이라는 상호의 피시방(이하 '이 사건 피시방'이라 한다)을 운영하던 중 2014. 3. 1.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(이하 위 양도를 '이 사건 양도'라 한다), 그 양도대금을 2,7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,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 전액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되, 원고와 피고는 위 대금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약정에 따라 2014. 7. 28.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46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는데, 이는 '피고가 원고에게 2,700만 원을 변제기 2016. 3. 1.로 정하여 대여하되, 이자는 연 25%로 원고로부터 매월 1일 지급받기로 한다.'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그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둔 채 이 사건 피시방에서 영업하던 중 2016. 5.경 ~ 6.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, 피고는 2016. 6. 24. 폐업신고를 하였다.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이 사건 양도 관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의 내용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대금 2,7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, 다만 원고가 위 돈을 즉시 지급할 수 없어 이를 2016. 3. 1.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되, 그 이자를 연 25%로 하여 매월 1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,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.

2) 피고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은 2,7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, 원고가 이를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, 위 양도대금 이외에도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대금(피고는 이를 '지분금'이라고 칭한다)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,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의 지급시기와 이자는 형식적인 것이다.

나.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,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이 2,7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, 원고가 이를 곧바로 지급할 수 없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지급의 방법과 관련하여 약정하고 그 '약정내용을 확인하는 차원'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,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,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, 피고와 사이에 '원고가 피고에게 양수대금 2,700만 원을 2016. 3. 1.까지 지급하되, 그에 대한 이자를 연 25%로 하여 매월 1일 지급한다'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2) 한편,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이외에도 운영대금(지분금)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피고에게 정기적이지는 않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, 피고가 당초 F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양도하려 하였을 때 양도대금 이외에 매월 임대료 등의 명목의 추가금원을 요청했었던 사실, 피고와 F 사이의 양도가 성사되지 않자 F이 원고와 함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

작성하면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정기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별도의 서면도 작성하지 않은 점, 이 사건 피시방의 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운영의 대가를 주고받는다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, 증인 F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의무 이외에 별도의 운영대금(지분금)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, 피고는 상당한 비용으로 이 사건 피시방을 개업하였던 것이어서 운영대금(지분금)을 별도로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차피 양도대금 2,7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로는 운영대금(지분금)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니, 결국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권을 포함한 가치는 양도대금 2,700만 원에 모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앞서 언급한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영대금(지분금) 등 명목의 월 일정액의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정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구한다.

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(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중 변제일과 변제액의 각 기재 부분과 같음)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(피고도 원고가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월 90만 원으로 감액되기 전에 매월 120만 원 가량을 원고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없는 이상,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변제충당에 필요한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), 이를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.

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,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양도대금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의 양도대금 2,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 양도대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반소에서 구하지 않고 있다)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양도대금은 전액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25,065,07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, 나머지는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대금 원금 중 잔액인 25,065,0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(운영대금)지분금 청구

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. 1.분부터 이 사건 피시방의 양도대금 2,7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월 90만 원의 약정 지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5. 결론

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두호

별지

1) 소장 중 청구취지에는 기산일이 누락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에 그 기재가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청구취지를 보완함